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는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4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5. 11. 14.
3. 회 부 일 :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근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개정안은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u>5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 ----- ----- <u>2천만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긴급신고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4조제1항). 또한,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제4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27조제1항).

< 현행법령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 처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별표]	200	400	500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위급상황	현행	개정안	비고
119긴급신고를 이용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2,000만원	

거짓 신고로 인해 긴박한 화재나 구조·구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조에 지장을 준다는 측면에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억제력을 강화하고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과태료의 상한액 상향 여부는 해당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 효과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과태료 액수에 대한 유사 법률 규정과의 형평성, 소관 부처의 정책적 필요성, 국민의 정서적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상한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인 「과태료 금액 지침」¹⁾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처는 위반행위를 방지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한 침해로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범위를 1,0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1) 법제처, 과태료금액 지침, 2019.

< 행정상 명령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 설정(예시)>

등급	금액범위	내 용
A 등급 (상위등급)	1천 이상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커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 - 위반행위자가 대기업, 대규모유통업자 등으로서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B 등급 (중위등급)	1천 미만 3백 이상	<u>위반행위를 방지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를 가저올 가능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u> - 국토,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범위반상태의 제거 내지는 위반상태 전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C 등급 (하위등급)	3백 미만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 가능성이 낮은 단순 위반행위로서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정이 가능한 위반행위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동물소유자 등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에 대한 명령인 경우

(자료: 법제처)

참고로,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법률상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 분포는 현행 법률 기준으로 ‘1천만원’이 23.0%, ‘500만원’이 2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행정상 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 분포>

상 한 액		1백 이하	2백	3백	5백	1천	1천 초과	합계
행위	건수	64	29	67	81	92	68	401
	%	(16.0)	(7.2)	(16.7)	(20.2)	(23.0)	(17.0)	(100.0)

(자료: 법제처)

둘째, 현행 법률에 거짓 행위로 소방력 등 공권력을 낭비하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거짓 행위로 소방력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규정을 살펴보면,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9조제1항),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6조제1항제1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고(제4조제3항), 이를 위반해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30조제1항)²⁾.

「경범죄 처벌법」에는 ①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제3조제2항제3호), ②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2) 119 거짓(허위) 신고 관련 법률별 과태료 규정 비교표는 [참고 2] 참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제3조제3항 제2호),

고의 또는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공무집행 방해죄(제137조) 또는 업무방해죄(제314조)를 적용할 수도 있음.

<현행 법률 상의 거짓신고 관련 제재규정(예시)>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 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과태료)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3.18.]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현재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것이 거짓신고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2019년 이후 119접수센터³⁾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고 건수 75,805,615건 중 거짓의 신고 건수가 4,520건으로 전체의 0.00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짓(허위)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거짓신고 중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도 전체의 0.86%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5년 간 119 상황실 신고 건수 현황>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6월
전체 신고건수(A)	75,805,615	11,567,173	11,274,559	12,075,804	12,546,469	11,956,459	11,354,929	5,030,222
거짓 신고건수(C)	4,520	930	738	954	986	377	483	52
%(C/A)	0.0060	0.0080	0.0065	0.0079	0.0079	0.0032	0.0043	0.0010

(자료: 소방청)

<2019년 이후 5년간 119 거짓(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거짓신고 건수(A)	930		738		954		986		377		483		52	
과태료 부과 건수(B)	13	5,000	4	5,000	4	7,000	-		7	12,800	7	29,360	4	6,000
-화재	8	3,000	3	3,000	2	4,000	-		3	6,000	3	16,000	2	4,300
-구조	-		-		1	1,000	-		-		-		-	
-구급	-	2,000	1	2,000	1	2,000	-		4	6,800	4	13,360	2	1,700
B/A(%)	1.40		0.54		0.42		-		1.86		1.45		0.45	

(자료: 소방청)

이와 같이 과태료 부과 현황이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소방청은 명백한 허위 신고로 판단되더라도 신고자의 현장 이탈, 정지된 전화 사용 등 과태료 부과를 위한 대상자 특정 및 신분 확인이 곤란하여 거짓의 명백한 증거 입증이 쉽지 않고, 현장 대원의 행정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⁴⁾.

소방청은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119긴급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소방청 소관 주요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은 500만원 이하로⁵⁾,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4) 소방청은 119허위(거짓)신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상세 내용은 [참고 3] 참조

5) 소방청 소관 주요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 현황은 [참고 4] 참조

참고 1

법제처, 과태료금액 지침 “붙임1(행위유형별 분석자료) 발췌”

유형 4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

- 유형: 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상한액 분포 및 특성

상 한 액		1백 이하	2백	3백	5백	1천	1천 초과	합계
행위	현 행	64	29	67	81	92	68	401
수	2000년 이후	46	20	43	59	82	33	283

- **(특성)** 개인정보, 안전, 외국환 등 관련 명령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경미한 시설개선명령, 원상회복, 장애물 제거 등에 관한 명령의 경우 2백만원 이하로 규정

▷ 고려요소

- **(명령의 종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이행명령이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 일반적인 감독상 명령이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명령보다 높게 설정
- **(명령의 내용)** 국민의 권리 침해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명령인지, 환경보전 등 공익상의 필요를 위한 명령인지, 피감독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인지를 고려하여 설정
- **(명령권자)** 국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인지, 시·도지사인지, 시·군·구청장인지를 고려하여 설정

▷ 상한액 설정예시

등급	금액범위	내 용
A 등급 (상위등급)	1천 이상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커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 ▪ 위반행위자가 대기업, 대규모유통업자 등으로서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B 등급 (중위등급)	1천 미만 3백 이상	▪ 위반행위를 방지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 ▪ 국토,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범위반상태의 제거 내지는 위반상태 전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C 등급 (하위등급)	3백 미만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 가능성이 낮은 단순 위반행위로서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정이 가능한 위반행위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동물소유자 등 개인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명령인 경우

참고 2

119 거짓(허위)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 비교표

구분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과 금액	과태료 금액		
	5백만원 이하	1차 위반 2백만원	2차 위반 4백만원 3차 이상 위반 5백만원
상황	· 화재,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 ※ 화재, 구조, 구급만 해당됨	·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 ※ 범위가 포괄적임	·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부과 대상	·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 ※ 현장이 중점	·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 를 발견한 사람(누구든지) ※ 현장+요구조자가 중점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제2조 제1호)	·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 를 한 사람(누구든지) ※ 119긴급신고가 중점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제2조 제2호)
부과권자	·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청장등(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소방청장등(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법률 조항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이 부과·징수한다.

참고 3

소방청, 119허위(거짓)신고 과태료 처분 강화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119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 야기
- 소방기본법·119법 개정으로 과태료를 상향(200 → 500만원)하는 등 엄정대처 기조에도 불구하고, 소극 처분에 대해 지속 문제 제기(국회, 언론)

□ 추진상 문제점

- 거짓의 명백한 증거 입증이 쉽지 않고, 현장대원의 행정적 부담 존재
- 명백한 허위신고로 판단되더라도 신고자의 현장 이탈, 정지된 전화 사용 등 과태료 부과를 위한 대상자 특정 및 신분 확인 곤란

□ 강화방안

- (적극대응) 허위신고에 대한 소관부서, 역할,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상습 또는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조치

《허위신고 처리 절차(예시)》

-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상황실) → 현장출동 후 상황판단*(출동대) → 허위신고 적발** (출동대) → 과태료 부과(특사경팀)

* 허위신고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 신원 확인

** 신고자 인적사항, 현장활동 자료(일지) 등을 소방서(본부) 특사경에 인계

- (교육강화) 원활한 과태료 처분을 위한 현장대원 대상 직무교육 및 출동대원이 오인신고나 '환자 없음' 사례를 일지(활동정보시스템)에 '거짓 신고'로 입력하지 않도록 안내 철저
- (실적관리) ①과태료 부과 실적 및 ②과태료 미부과 건에 대한 사유 또는 처분 내용을 매분기 관리
- (홍보활동)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상상해 보세요!"

119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장난전화·거짓(허위)신고로 인한
막대한 피해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중증응급환자(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를 위해 119구급차를 양보해 주

단순치통	단순감기	단순외상 (팔다름·타박상·열상)	주위자	외래진료

"술에 취했어요" "택시가 안잡혀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119허위신고 홍보자료 >>

참고 4

소방청 소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연 번	법률명	적용 조항	위반행위	적용대상	과태료 상한액
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누구든지	500만원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에 거짓으로 알린 자	누구든지	500만원
3	소방기본법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 짓으로 알린 사람 등	사고현장 발견한 사람	500만원
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명칭 사용자	500만원
5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6조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명칭 사용자	500만원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 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 관리자	300만원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안전시설등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다중이용 업주	300만원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 한 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500만원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자	관계인	300만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제1~9호)	관계인	500만원
1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등 명령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관계인	200만원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등록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방시설 업자	200만원
13	소방장비관리법	제48조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500만원

